미소포토부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97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26

미소포토부스

정 보 공 개 서

(주)티엠벤처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티엠벤처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동)

대표전화: 1877-6515 가맹사업부전화: 1877-6515

팩스번호: 031-658-458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증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 , Q. Z. | 미소포토부스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 |
| (주)티엠벤처스 | 2020-11-25 | | 2020-12-01 | 박헌 | 1877- | 6515 | 031-658-4588 | | |
| | 법인등록번호 1 | | 34611-0110704 사업자등 | | 등록번호 | 23 | 3-87-02050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동) | | | | |
| 임원 | 박헌 | 미소포토부스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박헌 | 1877-6515 | 031-658-4588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 | | | | | |
| 임원 | 신동권 | 신동권 | 미소포토부스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박헌 | 1877-6515 | 031-658-4588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동) | | | | |
| 임원 | 김선희 | 미소포토부스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박헌 | 1877-6515 | 031-658-4588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 한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_ | _ | - | _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_ | _ | - | _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_ | _ | _ | _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_ | _ | _ | _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미소포토부스 | - |
| 상 호 | 미소포토부스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_ | _ |
| 광 고 | _ | _ |
| 그 밖의 영업표지 | _ |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년 | 110,481 | 385,262 | -274,780 | 104,703 | -271,234 | -261,688 |
| 2023년 | 149,202 | 593,626 | -444,424 | 124,438 | -169,618 | -169,644 |
| 2024년 | 277,204 | 691,442 | -414,238 | 694,545 | 30,229 | 30,186 |

※ 별첨4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름 | 현 직위 | | 사업경력 | |
|----------------|-----|------|------------|---------------|----------|
| 7 T | 기급 | 면 색귀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 박헌 | 대표이사 | 2020.11~현재 | (주)티엠벤처스 대표이사 | 회사 업무 총괄 |
| 관련 임원 | 신동권 | 이사 | 2020.11~현재 | (주)티엠벤처스 이사 | 영업 |
| 선언 함전 | 김선희 | 이사 | 2020.11~현재 | (주)티엠벤처스 이사 | 관리 |
| 가맹사업 | _ | _ | _ | _ | _ |
| 비관련 임원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
|----------------|-----|------|------------------|
| 八名 | 상근 | 비상근 |] 석천구(경 <i>)</i> |
| *2024년 12월 31일 | 3 | 0 |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 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영업표지, 상표사용 | - | - | _ | - |

※ 해당 사항 없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0년 12월 03일

2. 해당가맹사업 연혁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명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해리포토 | 해리포토 | 박헌 | 2020.12.03.~현 2023.04.26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효자비길 9, 3층 |
| (주)티엠벤처스 | 해리포토 | 박헌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동) |
| (주)티엠벤처스 | 미소포토부스 | 박헌 |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7, 301호(용이동) |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 영업표지 | 허법 | 조 ° |
|--------|-------|-----------|
| 미소포토부스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可公里是十二 | 기타서비스 | 사진, 인화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ત્રો ભ્રે | 지역 2022.12.31. | | • | 4 | 2023.12.31 | • | | 2024.12.31 | • |
|----------------|----------------|------|------|----|------------|------|----|------------|------|
| \\ \frac{1}{3}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7 | 7 | 0 | 1 | 1 | 0 | 10 | 10 | 0 |
| 서울 | 1 | 1 | 0 | 0 | 0 | 0 | 6 | 6 | 0 |
| 부산 | 1 | 1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2 | 2 | 0 | 0 | 0 | 0 | 1 | 1 | 0 |
| 인천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광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2 | 2 | 0 | 0 | 0 | 0 | 1 | 1 | 0 |
| 강원 | 0 | 0 | 0 | 0 | 0 | 0 | 1 | 1 | 0 |
| 충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2 | 7 | 0 | 0 | 0 | 0 | 7 |
| 2023 | 7 | 0 | 6 | 0 | 0 | 1 |
| 2024 | 1 | 9 | 0 | 0 | 0 | 10 |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2024년 기 | -맹점사업지 | | | | |
|-------|-------------|--------------|---------------------------|------------------|---------------------------|------------------|---------------------------|----------------|
| 지역 | *2024년 말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비고 |
| | 가맹점 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10 | 141,835 | 10,585 | 405,688 | 27,046 | 48,767 | 3,444 | * 5 곳 산정제 외 |
| 서울 | 6 | 182,840 | 13,713 | 405,688 | 27,046 | 51,667 | 3,444 | * 3 곳 산정제 외 |
| 부산 | 0 | | | | | | | |
| 대구 | 1 | | | | | | | * 5곳 미만 * |
| -11 1 | 1 | | | | | | | 1 곳 산정제외 |
| 인천 | 1 | | | | | | | * 5곳 미만 |
| 광주 | 0 | | | | | | | |
| 대전 | 0 | | | | | | | |
| 울산 | 0 | | | | | | | |

| 세종 | 0 | | | | |
|----|---|--|--|--|---------------------|
| 경기 | 1 | | | | * 5곳 미만 *1 곳 산정제외 |
| 강원 | 1 | | | | 1 天 산성세되 * 5곳 미만 |
| 충북 | 0 | | | | |
| 충남 | 0 | | | | |
| 전북 | 0 | | | | |
| 전남 | 0 | | | | |
| 경북 | 0 | | | | |
| 경남 | 0 | | | | |
| 제주 | 0 | | | | |

※ 가맹점 매출액은 POS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4 | 10개 | 262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丁七 | | /1년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川立 |
| 광고 | 37LE 1000000 | (비공개) | 1,310 | 871E | (धास्त्रम्) | |
| 판촉 | _ | | 0 | 0 | _ | |
| 합계 | _ | _ | 1,310 | 371E | (धास्त्रम्)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해당 사항 없음(프랜차이즈 피해보상보험 제도 이용 예정)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대상 | 의결번호 (사건번호) | 위반법령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
| _ | - | _ | - | _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여부 | 비고 |
|-----------------------------|-------|---------|-------|
| 가맹금 | _ | _ | 없 |
| 보증금 | _ | _ | 없음 |
| 인테리어, 설비, 기기, 비품 등 기타 비용 | 자율선택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0 | _ | _ | _ | 가입비 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부여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
| 교육비 | 0 | _ | - | _ | _ |
| 총계 | 0 | _ | _ | _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화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보증금 | 0 | - | 경영시도미 미시급, 가명급 미기그 보시가 고그차 무프 | 잔존채무, 손해 배상액등과 정 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 가맹비 | 0 | 부가세포함 |
| 교육비 | 0 | 부가세포함 |
| 보증금 | 0 | 부가세없음 |
| 합계 | 0 | _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인테리어 기본공사 | | 33,000 | 2,200 | 자율 | 미 공사 시 | 49.5 <i>m</i> ² (15평)기준 |
| 간판(내외부사인) | | 4,400 | _ | | | |
| 사진장비 | 자율선택 | 66,000 | _ | | | |
| 지폐교환기 | | 1,320 | _ | 레아니 | 미 공급 | |
| 앰프스피커 | | 330 | _ | 계약시 | 시 | |
| CCTV | | 3,850 | _ | | |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2,200 | _ | | | |
| 총계 | _ | 111,100 | 7,407 | _ | _ | _ |

※ 매장의 크기,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비는 금5,5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인테리어와 간판(내외부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느 냐 등을 검수하며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외부공사, 소방설비,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 가맹본부 | 50%(가맹본부):50 %(가맹점사업자) | 2주일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50%(가맹본부):50 %(가맹점사업자) | 2주일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가 맹 점 모 집 + 상품광고 |
| | 가맹본부 | 100%(가맹본부):0 %(가맹점사업자) | _ | - | _ | 가맹점모집광 고 시 |
| 판촉 분담금 | 가맹본부 | 협의 | 2주일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판촉 시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협의 | 교육실시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교육필요시 실시 |
| 로열티 | _ | _ | - | _ | _ | 없음 |
| 운영 및 서버관리비 | 가맹본부 | 월 매출의 7.7% | 매 익월 5일 | - | 후불 | ※ 월매출= 현금매출+카드 매출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
| 점포환경개 선 비용 | 자율선택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_ | - | _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 한 지원" 항 목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자율선택 | 협의 | 허 | 실시 전 | 실시 후 | 교 체 비 용 은 당사자의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 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 1회 | 문의: 관리팀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분기 1회 | 문의: 관리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 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 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교육비, 보증금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고 가맹비, 교육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파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_ | _ | _ |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 내용 | 금액 | 비고 |
|---------|-------|-------|-----------|----|----|
| - | _ | _ | _ |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_ | - | - | 1 | -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사진인화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 | |
| 사진촬영 | 1 |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 |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 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 |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
| 타가맹점사 업자 |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 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 역) | _ , _ , | 2외 위반· 서면 시성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에 명시된 내역) | 가맹본부에 의해 제시 된 상품/서비스 가격 표에 명시 | 홈페이지, 유선, 팩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중절만 집중 함기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미소포토부스와 동일한 업종(사진촬영, 사진인화 서비스) | 미소포토부스 | 해당 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가맹점 기준 직선 반경(점포 간 이격거리)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500미터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비고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 서며 토기호 여어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 | - | _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_ | _ | _ | _ |
| | _ | - | _ | _ |
| 홈쇼핑 | _ | _ | _ | _ |
| 전화권유판매 | _ | - | _ | _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 | ·내 온라인·오프라인 |] 판매 매출액 비중 | <u>-</u> 0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 매출액 비중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② |
| *2024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100% | 0% |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 D-180 ~ D-90 |

| _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 A. |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В.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 _ |
| |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Ē.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 |
| |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 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 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 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 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일정수준을 넘은 경우 또는 대금지급(로열티 등)을 연체한 경 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 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 게 공급한 경우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으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 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 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아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2) 가맹본부의3) 가맹사업의 |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통일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 갱신하는 경우 | 제43조 제3항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기 하다 한 이 기만 된 한 기 된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관리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 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 |

| | | 승인 → 교육 수료 |
|------------|------------|-----------------------|
| નો ગેસો દો | ㅂㅂ 스시 기 키느 | 가맹본부가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승인한 권리의무 승인 → 교육 수료 |
| 업무위탁 | 비비 스이 기 키노 | 가맹본부가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
| 입구위덕 | 본부 승인 시 가능 | 승인한 권리의무 승인 → 교육 수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았던 동일 영업지역 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미소포토부스'와 동일한 업종(사진촬영, 사진인화 서비스)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자율 | 자율 | 문의: 관리팀 |

[※] 특수상권 영업지역은 해당 상권의 영업 방침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자율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 _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ㆍ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회/월 | 본사 관리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 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1회/월 | 본사 관리팀 | |
| 서비스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회/월 | 본사 관리팀 | |
| 강사 관리 | 담당자 가맹점 방문 → 강사 강의시간 점검 → 평가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1회/월 | 본사 관리팀 | |
| 교육시설 관리 | 담당자 가맹점 방문 → 평가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1회/월 | 본사 관리팀 | |

당사는 가맹점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매달 1회씩 가맹점을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미흡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 | 비율 | 보다 저희 | 비고 | |
|-------|----------------------|-------|--|-----------|---------|--|
| 十七 | 8 보 경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 |
| |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 50% | 50% | 별도 절차 없음 | 대중매체 광고 | |
| 광고 | 가맹점모집+ 상 품광고 | 50% | 50% | 일고 실시 없음 | 대중에게 중고 | |
| | 가맹점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_ | _ | |
| 개별 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 |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 금 확정 | 개별 행사, 광고 | | |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 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 • 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 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

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 벌, 위약금과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제20조(경업금지 의무),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위약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 벌로 금삼천만원(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삼십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삼천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5평 기준, 부가세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3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_ | |
| 상담 |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_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 서 제공 14일 후 계 |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 약 |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30 | 9p~10p참조 |
| 가맹금 예치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8~26(2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6~24(2일) | |
| 점포집기 | - 점포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 D-5~1(5일) |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1(1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 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 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 가맹본부 부담 | | 비용부담 | |
|----------|-----------|-----------|---------------|-----------|--------------|
| 사유 | 비용항목 | 비용비율 | 지급절차 | 제외사유 | 비고 |
| ㅇ점포의 시설, | ㅇ간판교체 비용 | 이점포의 확장 | ㅇ 가 맹 점 사 업 자 | ㅇ 가 맹 사 업 | . 기 도 위 |
| 1 - ' -/ | , , , | | | | ㅇ점포환 |
| 장비, 인테리어 | o인테리어 공사 | 또는 이전을 수 | 의 비용 청구 | 거래의 공 | 경개선 |
| 등의 노후화가 | 비용(장비·집기 | 반하지 않는 점 | (공사계약서 등 | 정화에 관 | 일로부 |
| 객관적으로 인 | 의 교체비용을 | 포환경개선 : | 공사비용을 증 | 한 법률 | 터 3년 |
| 정되는 경우 | 제외한 실내건 | 20% | 빙할 수 있는 | 제12조의2 | 이내에 |
| ㅇ위생이나 안전 | 축공사에 소요 | ㅇ점포의 확장 | 서류 첨부) → | 규정에 의 | 가 맹 본 |
| 의 결함으로 인 | 되는 일체의 비 | 또는 이전을 수 | 90일 이내에 | 해 부담제 | 부 의 |
| 하여 가맹사업 | 용. 단, 가맹사 | 반하는 점포환 | 가맹본부 부담 | 외사유 해 | 책 임 없 |
| 의 통일성을 유 | 업의 통일성과 | 경개선 : 40% | 액을 가맹점사 | 당 시 | 는 사 |
| 지하기 어렵거 | 무관하게 가맹 | | 업자에게 지급 | | 유 로 |
| 나 정상적인 영 | 점사업자가 추 | | (단, 가맹본부와 | | 계약이 |
| 업에 현저한 지 | 가 공사를 실시 | | 가맹점사업자간 | | 종 료 |
| 장을 주는 경우 | 함에 따라 소요 | | 별도의 합의가 | | (계약 |
| | 되는 비용은 제 | | 있는 경우 1년 | | 의 해 |
| | 외) | | 의 범위내에서 | | 지 · 영 |
| | | | 분할지급 가능) | | 업양도 |
| | | | ㅇ 가 맹 점 사 업 자 | | 포 함) |
| | | | 가 가맹본부 | | 되 는 |
| | | | 또는 가맹본부 | | 경 우 |
| | | | 가 지정한 자 | | 가 맹 본 |
| | | | 를 통하여 점 | | 부 부 |
| | | | 포환경개선을 | | ' ' 담 액 |
| | | | 한 경우에는 | | ㅁ ㄱ 중 잔 |
| | | | 점포환경개선 | | 6 전 여기간 |
| | | | 이 끝난 날부 | | – |
| | | | 터 90일 이내 | | |
| | | | 의 30 현 의대 | | 례하는 |

| |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 차>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위생관리, 교육훈련,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관리팀 |

| |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 문의: 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사업회사 소개, 서비스 교육 | 이론, 실습교육 | 오픈 1일 전 까지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신기술, 운영 실무 등 | 실습, 이론 | 필요시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필요시 | 실습, 이론 | 필요시 | 필요시 실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1일 | 없음(1인기준)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
| 특별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필요 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오픈 1일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_ | _ | _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_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_ | _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877-651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 | | 가맹금예치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상호(가맹점)명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주소(사무소) | | (전화: |) |
| | 상호명(영업표지) | | | |
| 가맹 본부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사무소) | | (전화: |) |
| 예치가맹금 | | ₩ (글 | | 원 정) |
| 신청인의 계좌 | | | | |
| 가맹본부의 계좌 | | | | |
| | | 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 -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 | 명 또는 인) |
| 예치기관의 장 귀 | | ÷1. | | |
| 지점장 | | 'I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가맹점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제공일: 2021년09월16일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 상호 | |
|---------|--|
| 브랜드명 | |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② 주소 | | | | | |
| ③ 전화번호 | | | | | |
| ④ 제공일시 | 년 | 월 | 일 | 시 | |
| (b) 제 8 코기 | ※ 제공 받은 시간까지 | 작성(24시 형태 | 태로), 예)오후 | 호 2시면 14시로 기재 | |
| | | | | | |
| ⑤ 제공받은 장소 | ※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 | | | |
| | 가맹계약서 | 정보공 | ·개서 |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 |
| ⑥ 수령확인문구 |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 | | |
| | | | | | |
| |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 반드시 가맹 | 희망자 자필. | 로 기재 | |
| | | | | | |

|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sim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가맹본부 보관용

v.2014.0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 상호 | |
|---------|--|
| 브랜드명 | |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② 주소 | | | | | |
| ③ 전화번호 | | | | | |
| ④ 제공일시 | 년 | 월 일 | 시 | | |
| · 항 제 이 현기 | ※ 제공 받은 시간까지 | 작성(24시 형태로), 예) | 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 | |
| | | | | | |
| ⑤ 제공받은 장소 | ※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 | | | |
|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 | |
| ⑥ 수령확인문구 |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 | | | |
| |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i>수 령 하 였 음</i>) | | | | |
| |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 | | | |
| | | | | | |
|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 | | | |
| 제공자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담당자 주의사항: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 | |

- 42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